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2. 27.(화) 11:00 < 2.28.(수) 조간 > 배포 2024. 2. 27.(화)

디지털통상 청년 전문가 양성 확대한다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확대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국제통상 환경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통상 분야 맞춤형 고급 청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2개 → (확대) 석·박사 학위과정 3개, 산업계 종사자 등 비학위과정 1개

동 사업은 민간 분야의 디지털통상 분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2022년 2학기부터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표준협회)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개 대학원(서울대 국제대학원,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70명 내외) 및 5개 대학(고려대·서울시립대·인천대·경북대·충남대) 학부 과정(16개 강좌), 재직자 실무과정, 디지털통상 교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 시행 3년 차로, 디지털통상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보급에 대한 교육계와 산업계의 높은 관심과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통해 석·박사 학위과정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비학위과정에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선정하였다. 추가로 선정된 대학원들은 과정 신설·개발, 학생 모집 등 준비를 거쳐 올해 2학기부터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국제통상환경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를 위한 노력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신통상전략지원관 디지털경제통상과	책임자	과 장	고장원 (044-203-4880)
		담당자	사무관	정성관 (044-203-488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 고 **디지털 통상 및 디지털 통상규범의 주요 내용**

□ **디지털 통상이란,**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 등 교역 및 이와 관련된 경제주체 간 초국경적 활동 전반을 의미

구분		디지털 전환 양상 예시 (통신·데이터 기반으로 변화)		
산업	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	IoT 가전, 커넥티드카
	서비스	의료, 교육	⇨	원격의료, 온라인강의
	디지털제품	S/W CD, 영화/음악 DVD	⇨	인터넷 실시간스트리밍
新산업		(不존재)	⇨	플랫폼, 클라우드
⇩		⇩		⇩ 산업 변화 반영
무역·통상		(거래방식) 오프라인 (거래대상) 상품·서비스	⇨ ⇨	온라인(전자상거래) 디지털재화, 데이터
⇩		⇩		⇩ 통상 변화 반영
통상 규범		WTO GATT/GATS, RTAs	⇨	디지털 통상규범 要

□ **인터넷 보급의 확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가 간 상거래**에서도 새로운 **거래방식**과 **거래대상**이 출현

○ 무역 방식이 **전자상거래**로 전환되고, 산업 변화에 따라 국경간 **디지털 제품·서비스 거래, 데이터의 이동이 급증**

< 디지털 통상협정 주요 조항 >

구분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전자적 전송물(예: 음원 등)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보장
	전자인증·서명	전자서명의 법적효력 인정, 거래 당사자간 전자인증수단 상호 합의 보장
	종이없는 무역	전자무역행정문서에 종이문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 인정
디지털 경제 신뢰 구축	온라인 소비자 보호	사기·기만적 상업행위로부터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체계 구축·유지, 소비자 보호 기관간 협력
	스팸 메시지	스팸메시지 방지·최소화 조치 및 구제수단 마련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 법체계 마련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	디지털제품 비차별 대우	상대국 디지털 제품에 대해 자국 또는 제3국의 동종 디지털 제품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국경간 정보 이전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국경간 정보(개인정보 포함) 이전 허용
	컴퓨팅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사업수행의 조건으로 당사국 영역 내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게 하거나 위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
	소스코드·알고리즘	SW의 수입·유통·판매·사용 조건으로 소스코드·알고리즘 이전·접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암호화 ICT 제품	암호화된 ICT 제품의 상업적 이용 조건으로 암호기법 이전·접근을 요구하거나 특정암호 사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공개 정부데이터	민간 활용을 위한 정부 데이터 공개 노력